## 목민심서(牧民心書)1)

※ 본 내용은 『목민심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며 번역은 『목민심서』(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 『목민심서』, 창비, 2000. <www.krpia.co.kr>)을 따랐다. 경우에 따라 강의 내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하였으며 수업교재로 쓰기 위해 발췌하여 제작했으므로 영리 목적은 없음을 밝힌다.

# 『목민심서』 목차

## 자서(自序)

## 1부 부임(赴任) 육조(六條)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으로 간다)

제1장 제배(除拜): 수령으로 임명되다.

제2장 치장(治裝) : 임지로 떠나기 위해 차리는 준비

제3장 사조(辭朝) : 조정에 나가 하직하는 절차

제4장 계행(啓行) : 부임 행차

제5장 상관(上官) : 부임된 관청의 첫 출근

제6장이사(莅事) : 집무를 시작함

# 제2부 율기(律己) 육조(六條) (몸을 단속한다)

제1장 칙궁(飭躬): 자신의 몸단속, 바른 몸가짐

제2장 청심(淸心) : 마음을 깨끗이 함

제3장 제가(齋家): 집안을 먼저 다스려라

제4장 병객(屏客) : 과이에 손님을 불러들이지 말라

제5장 절용(節用): 재물을 절약하라

제6장 낙시(樂施): 기꺼이 베풂

# 제3부 봉공(奉公) 육조(六條)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한다)

제1장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펌

제2장 수법(守法) : 법을 지킴

제3장 예제(禮際): 예의로 사귐

제4장 문보(文報): 보조 문서(공문서)

제5장 공납(貢納) : 세금과 공물을 받아 바침

제6장 왕역(往役): 출장 근무

<sup>1)</sup>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수령의 지침서로 지은 책, 전라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해배(解配)되던 해인 1818년(순조 18)에 완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서를 비롯해 자(子)·집(集) 등에서 치민(治民)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 수록함으로써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 제4부 애민(愛民) 육조(六條) (백성을 사랑함)

제1장 양로(養老): 노인을 공경함

제2장 자유(慈幼) : 어린이를 보살핌

제3장 진궁(振窮): 가난한 자를 구제함

제4장 애상(哀喪): 상사(喪事)를 애도함

제5장 관질(寬疾) : 환자를 돌봄

제6장 구재(救災): 재난을 구제함

## 제5부 이전(吏典) 육조(六條) (행정업무 총괄)

제1장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함

제2장 어중(馭衆): 아랫사람 다스리기

제3장 용인(用人): 인사 관리

제4장 거현(擧賢): 어진이를 천거함

제5장 찰물(察物) : 회계 관리, 물정을 살핌

제6장 고공(考功) : 성과 관리, 성적을 매심

## 제6부 호전(戶典) 육조(六條) (세금관리)

제1장 전정(田政) : 토지 행정

재2장 새법(稅法) : 조세의 부과와 장수

제3장 곡부(穀簿): 재원 관리, 환곡의 관리

째4장 호적(戶籍) : 인구 실태와 파악

제5장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함

제6장 권농(勸農) : 농업 육성, 농사를 권장함

### 제7부 예전(禮典) 육조(六條) (예법 운영)

재1장 제사(祭祀) : 제사 의식

재2장 번객(審客) : 찾아온 손님맞아

제3장 교민(敎民): 백성을 가르침

제4장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킴

제5장 변등(辨等) : 등급을 구별함

제6장 과예(課藝) : 학업을 권장함

## 제8부 병전(兵典) 육조(六條) (군사관리)

재1장 점정(簽丁) : 정집, 장정을 군적에 올림

재2장 연졸(練卒) : 군사 훈련

재3장 수병(修兵) : 병기 관리

제4장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함

제5장 응변(應變) : 변란에 대비함

제6장 어구(禦寇) : 국토 방위, 외적에 대한 방어

## 제9부 형전(刑典) 육조(六條) (형법과 법률)

제1장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재2장 다옥(斷獄) : 재파 옥사를 파결함

재3장 신형(慎刑) : 형벌을 삼가함

제4장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김

제5장 금포(禁暴) : 횡포를 엄하게 단속함

제6장 제해(除害): 치안 관리, 폐해를 제거함

## 제10부 공전(工典) 육조(六條) (건축, 산림)

제1장 산림(山林) : 나무를 가끔

재2장 천택(州澤) : 수리 시설 관리

제3장 선해(繕廢) : 환경 관리, 청사를 수리함

제4장 수성(修城) : 성곽을 수라함

제5장 도로(道路) : 길을 닦음

제6장 장작(匠作) : 산업 관리, 공산품 제조

## 제11부 진황(販荒) 육조(六條) (흉년에 빈민을 구제함)

제1장 비자(備資) : 물자 관리, 물자를 비축함

제2장 권문(勸分): 나누어 도움, 구제하기를 권함

제3장 규모(規模) :: 지원 사업, 진흡(賑恤,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움)의 세부 계획

제4장 설시(設施) : 목지 시설, 구호를 배퓲

제5장 보력(補力) : 힘을 보택

재6장 준사(竣事) : 지원 사업의 정리, 진휼(賑恤)을 마침

# 제12부 해관(解官) 육조(六條) (관직에서 물러남)

제1장 체대(遞代): 벼슬이 갈림

재2장 귀장(歸裝) : 돌아가는 행장

제3장 원류(願留) : 더 머무르기를 원함

제4장 걸유(乞宥) : 용서를 빎

제5장 은졸(隱卒) : 명예로운 마침, 임지에서 죽음

제6장 유애(遺愛) : 정(情, 사랑)을 남김

[소제목은 『목민심서』(다산 정약용 지음, 변진홍 엮음, 『목민심서』, 늘푸른소나무, 2012.)를 따랐음]

#### 자서(白序)

옛날에 순임금은 요임금의 뒤를 이으면서 12목(牧)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기르게 하였으며, 문왕이 정치제도를 세울 때 사목(司牧)2)을 두어 목부(牧夫)3)라 하였으며, 맹자는 평륙(平陸)4)에 갔을 때 추목(芻牧,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써 백성을 기르는 것에 비유하였으 니, 이로 미루어보면 백성을 부양하는 것을 가리켜 목(牧)이라 한 것이 성현의 남긴 뜻이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도(司徒)5)는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修 身)케 하고, 태학(大學)6)에서는 국자(國子)7)를 가르쳐 각기 수신하고 치민(治民)케 하였으니, 치민하는 것이 목민하는 것이다. 그런즉 군자의 학(學)은 수신이 그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 민인 것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멀어졌고 그 말씀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워졌으 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바는 알 지 못한다. 이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서로 쓰러져 진구렁을 메우 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나의 선친께서 조정의 대우를 받아 두 현의 현감(縣監), 한 군의 군 수(郡守), 한 부의 도호부사(都護府使), 한 주의 목사(牧使)를 지냈는데 모두 치적이 있었다. 비록 나의 불초(不肖)로서도 좇아 배워서 다소간 들은 바가 있었고, 보아서 다소간 깨달은 바도 있었으며, 물러나 이를 시험해 봄으로써 다소간 체득한 바가 있었다. 이윽고 유락(流 落)한 몸이 되어 쓰일 데가 없었다. 먼 변방 귀양살이 18년 동안에 오경(五經)·사서(四書)를 잡고 되풀이 연구하여 수기(修己)의 학을 익혔으나, 이윽고 생각해보니 수기(修己)의 학은 학 의 반에 불과하다. 이에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및 자집(子集)히 등 여러 서적에서 옛날의 사목(司牧)이 백성을 기르는 유적을 골라 위아래로 뽑아 정리하며, 종류별로 나누고 모아 차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남쪽 변두리 땅에서 나오는 전세(田稅, 논밭의 조세)와 공 부(貢賦, 공물과 세금)를 서리들이 농간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나의 처지가 이미 낮았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자못 자세하여 이것 또한 종류별로 기록하고 나 의 얕은 견해를 덧붙였다. ……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 나 몸소 실행할 수 없다.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

순조(純祖) 21년 신사(辛巳, 1821)년 늦봄에 열수(冽水) 정약용(丁若鏞)이 쓰다.

<sup>2)</sup> 백성을 부양하는 사람, 즉 국군(國君), 지방장관(地方長官) 또는 인민을 다스리는 관리의 장을 말한다.

<sup>3)</sup>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서경(書經)』입정(立政)편에 나오는 말이다.

<sup>4) 『</sup>맹자』 공손추(公孫丑) 하(下)에 나오는 고사(故事)이다. 평륙(平陸)은 전국시대 제(齊)의 읍(邑)이다.

<sup>5) 『</sup>주례(周禮)』에 나오는 육경(六卿)의 하나로서 지관대사도(地官大司徒)라고도 하였으며, 예교(禮敎)로 써 백성을 교화시키는 일을 맡아보았다.

<sup>6)</sup> 왕도(王都)에 세워 둔 대학(大學). 소학(小學)에서는 쇄소(灑掃), 응대(應對), 진퇴(進退)의 절차를 가르치는 데 대하여 수기(修己), 치인(治人)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부(學府)이다.

<sup>7)</sup> 왕족(王族) 및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제이다.

<sup>8)</sup> 자(子)는 사상적인 저술, 집(集)은 문집(文集).

# 1부 부임(赴任) 육조(六條)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으로 간다)

제1장 제배(除拜): 수령으로 임명되다.

○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牧民)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윗사람을 섬기는 자를 민(民)이라 하고 목민하는 자를 사(土)라고 하니, 사는 벼슬하는 자이고 <mark>벼슬하는 자는 모두 목민하는 자이다.</mark> 그러나 중앙관청의 관리는 공봉(供奉)을 직무로 삼거나 전수(典守)<sup>9)</sup>를 임무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나가면 거의 죄 되고 뉘우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수령(守令)은 만백성을 주재하니 하루에 모든 정치의 기틀을 처리함이 그 정도가 약할 뿐 본질은 다름이 없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와 비록 대소(大小)는 다르지만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다. 이런데도 어찌 목민하는 벼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오늘날 무인(武人)이 제 발로 전관(銓官)100을 찾아가서 수령되기를 구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풍속을 이루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여겨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 재주와 슬기가능한가 능하지 못한가를 구하는 자도 이미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는 자도 역시 알아보거나 묻지도 않으니 이것은 진실로 그릇된 것이다.

살피건대 재주는 짧고 재산은 넉넉하면서도 어버이 봉양을 구실삼아 고을살이를 구걸하는 것은 불의(不義)가 아니겠는가. 만일 백성을 다스릴 재주가 있다면 비록 자천(自薦)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 제2장 치장(治裝): 임지로 떠나기 위해 차리는 준비

## ○ 금침(衾枕)과 솜옷 외에 책 한 수레를 싣고 간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 될 것이다.

요즈음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겨우 <mark>책력(冊曆)</mark> 한 권만 가지고 가고, 그 밖의 서적들은 한 권도 행장 속에 넣지 않는다. 임지에 가면 으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이 반드시 무겁기 마련이니 한 권의 책일망정 부담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슬프다, 그 마음가짐의 비루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또 목민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사(文土)가 벼슬을 살게 되면 이웃에 사는 선비들이 질문도 하고 논란도 벌일 것이며, 이보다 한 등 아래로는 과문(科文)을 공부시키기도 할 터인데 고사를 참고하고 글제를 찾는데도모름지기 서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보다 한 등 아래로는 또 혹 이웃고을 수령들과 한 자리에 모여 산수(山水)간에 노닐면서 운(韻)자를 내어 시도 짓게 될 터이니 모름지기 고인의시집도 있어야 한다.

## 제3장 사조(辭朝) : 조정에 나가 하직하는 절차

○ 공경(公卿)과 대간(臺諫)<sup>11)</sup>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드릴 때에는 스스로 재기(才器)의 부적함을 말할 일이요, 봉록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봉록이 비록 박하다 할지라도 요컨대 열 식구가 굶주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령으로 나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다 같이 그 고을의 폐단 되는 것, 백성들의 걱정되는 것을 논할 일이요, 그 봉록이 후하다거나 박하다거나 하는 따위는 수치스러운 말이다. 그곳 봉록의 후함을 치하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대개가 부정한 물건이 많을 것이니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하고, 그 박함을 근심해 주는 자에게는 마땅히 "요

<sup>9)</sup> 공봉(供奉)은 왕에 대한 공궤봉상(供饋奉上), 전수(典守)는 각 기관의 직무를 맡아 지키고 수행함.

<sup>10)</sup> 관리의 임용을 전형(銓衡)하는 관원. 문관(文官)의 임용에는 이조(吏曹), 무관(武官)의 임용에는 병조 (兵曹)의 관원이 전관(銓官)이 되지만, 여기 수령(守令)의 임용은 모두 이조(吏曹)가 담당하였다.

<sup>11)</sup>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의 총칭.

컨대 열 식구가 굶주리지는 않을 터인데 무어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 ○ 전관(銓官)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전관(銓官)은 국가를 위하여 사람을 뽑아 썼으니 여기에 사은(私恩)을 끌어대어서는 안 될 것이요,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었으니 이를 사은으로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 제4장 계행(啓行) : 부임 행차

# ○ 부임하는 길에 있어서는 또한 오직 엄하고 온화하며 과묵하기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양 할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이에 그대가 먼 곳에 가는데 소문만 있었지 소리는 없구나"라고 하였는데, 군자의 행차는 그 엄숙함이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나라 풍속은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여 여러 하인들이 벼슬아치를 옹위(擁衛)하고 잡된 소리를 어지러이 발하여 백성이 바라보기에 엄숙 장중한 기상은 없어 보인다. 무릇 근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소리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령 된 자는 비록 말 위에 있더라도 마땅히지혜를 운용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백성에게 편의한 정사(政事)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결같이 부동(浮動)하기만 하면 어찌 침착하고 세밀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는가.

# 제2부 율기(律己) 육조(六條) (몸을 단속한다)

제1장 칙궁(飭躬): 자신의 몸단속, 바른 몸가짐

○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 것이다.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그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하며 한마디 말하고 한번 침묵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모두 살피어 의심쩍게 탐색하는 법이니,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고을로, 고을로부터는 사방으로 새어나가서 한 도(道)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안에 거처할 때에도 응당 말을 삼가야 하거늘, 하물며 벼슬살이할 때이랴. 시동(侍童)이 비록 어리고 시노(侍奴)가 비록 어리석다 하여도, 여러 해를 관청에 있으면 백번 단련된 쇠와 같아서, 모두가 기민하고 영리하여 엿보아 살피는 것이 귀신과 같다. 관아의 문을 나서기만 하면 세세한 것도모두 전하여 누설시킨다. 내가 십여 년 동안 읍내 바닥에서 귀양살이해보매<sup>12)</sup> 그 실정을 알게 되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군자가 집안에 살면서 그 말이 선(善)하면 천리 밖에서도 이에 응하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자이랴. 집안에 살아도 그 말이 불선하면 천리밖에서도 이를 어기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자이랴?" <sup>13)</sup>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계하고 너의 말을 삼가라" <sup>14)</sup> 하였으니,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불가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무릇 조급히 성내는 병통이 있는 자는 마땅히 평일에 마음속에 맹세하여 〈노즉수(怒 則囚, 성나거든 가두어라)〉 석 자를 폐간(肺肝)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

정선(鄭瑄)이 말하기를, "성났을 때의 언어는 도무지 체면을 잃어버린 것이니, 성내

<sup>12)</sup> 정약용(丁若鏞)은 1801년 강진(康津)으로 유배된 후 오랫동안 강진읍저(康津邑底)에 있다가 나중 귤 동(橘洞)으로 옮겨갔다.

<sup>13) 『</sup>주역(周易)』의 계사전(繋辭傳) 상(上)에서 인용한 것이다.

<sup>14) 『</sup>시경(詩經)』대아(大雅) 탕지십(湯之什)에서 인용한 것이다.

고 난 후에 생각해보면 자기의 더럽고 잗다란 속을 온통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만 것이되다."하였다.

○ 아랫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면 백성으로서 순종치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禮)를 차리는 데 공경하지 아니하면, 볼 것이 무엇 있겠는가"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 <sup>15)</sup>하였다.

양귀산(楊龜山)16)이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은 다만 일마다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사(政事)를 너그러이 하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권병(權柄)이 손에 있다고 하여 자기 성격대로 휘두르라는 것이 아닌 줄을 모르고 있다. 어찌하여 일찍이 백성들이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보면서도, 다만 관리가 백성을 많이들 침학하는 것은 볼 줄을 모른단 말인가?"하였다.

# ○ 군자가 무접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무게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배도(裵度)<sup>17)</sup>가 중서(中書)<sup>18)</sup>에 있을 때, 좌우가 갑자기 도장이 없어졌다고 아뢰었으나 그는 여전히 술 마시기를 계속하였다. 얼마 후에 다시 제자리에서 도장을 찾아내었다고 아뢰었으나 그는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누가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이는 필시 아전이 도장을 훔쳐 문서에 찍은 것인데, 급하게 되면 물이나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요, 늦추어주면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다."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도량에 탄복하였다.

한위공(韓魏公)이 대명부(大名府)19)에 있을 때에 백금(百金)을 주고 옥잔(玉盞) 1쌍을 샀는데, 밭갈이하던 자가 옛 무덤에서 얻은 것으로서 안팎에 흠이라고는 없는 큰 보물이었다. 하루는 조사(漕使)20)를 불러 술을 대접하였는데, 한 아전이 잘못 부딪쳐 옥잔이 모두 부서졌다. 공은 신색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물건의 만들어지고 부서짐은 역시 스스로 때가 있는 것이다."하고, 그 아전을 돌아보면서 "너는 실수를 했을뿐이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니 무슨 죄가 있으랴."하였다.

여조겸(呂祖謙)<sup>21)</sup>이 젊었을 적에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문 득 집기를 부수기도 하였다. 후에 오랜 병으로 인하여 단지 『논어(論語)』한 책만 가지고 가서 아침저녁으로 한가로이 읽더니, 홀연히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평정(平靜)해졌다. 마침내 종신토록 크게 노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가히 기질(氣質)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한위공(韓魏公)이 정무(定武)22) 지방을 맡아 지킬 때에, 밤에 공문을 작성하면서 한 시

<sup>15)</sup> 각기 『논어(論語)』 팔일(八佾)편 및 양화(陽貨)에서 인용

<sup>16)</sup> 중국 송(宋)의 학자. 이름은 시(時), 자는 중립(中立), 구산(龜山)은 그의 호. 정자(程子) 형제에게서 성리학(性理學)을 배웠다. 『구산집(龜山集)』이 있다.

<sup>17)</sup> 중국 당(唐)의 재상, 자는 중립(中立). 헌종 때 오원제(吳元濟)의 반란을 평정하고 중서령(中書令)을 지냈다.

<sup>18)</sup> 중서성(中書省)의 약칭. 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으로 더불어 당(唐)의 최고 정치기관인 3성 (省)을 이루었다.

<sup>19)</sup> 중국 하북성(河北省)에 있는 부명(府名).

<sup>20)</sup> 중국 송대(宋代) 전운사(轉運使)의 이칭(異稱). 징부(徵賦)의 최과(催科), 금곡(金穀)의 출납 등을 맡은 관원.

<sup>21)</sup> 중국 송(宋)의 학자. 자는 백공(伯恭). 동래선생(東萊先生)이라 불리었다. 저서에 『동래좌씨박의(東萊 左氏博議)』등이 있다.

<sup>22)</sup> 중국 하북성(河北省)에 있는 주명(州名).

병(侍兵)으로 하여금 곁에서 촛불을 들게 하였다. 시병이 다른 데를 돌아보다가 촛불로 공(公)의 수염을 태웠으되, 공은 급히 옷소매로 문지르고서는 글쓰기를 여전히 하였다. 얼마후에 돌아다보니 이미 그 시병은 바꾸어져 있었다. 공은 주리(主吏)가 그자를 매 때릴 것을 걱정하여 급히 불러 말하기를 "그자를 바꾸지 말라. 이제는 이미 촛불을 잡을 줄 알 것이다."하였다.

# ○ 술을 끊고 여색(女色)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쳐서 공손하고 단엄하기를 큰 제사 받들 듯할 것이요, 감히 놀고 즐김으로써 거칠고 방탕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선(鄭瑄)이 말하기를 "사람의 총명에는 한도가 있고 일의 기틀은 무궁한데, 한 사람의 정신을 다하여 뭇사람의 농간을 막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즐겨 술에 떨어지고 색정(色情)에 빠지며 시 짓고 바둑 두어서 드디어 옥중의 송사(訟事)가 해를 넘기고 옳고 그른 것이 뒤바꿔지면 소송거리는 더욱 많아지고 일의 기틀은 더욱 얽혀질 것이니 어찌 한 탄스럽지 아니한가. 닭이 울면 일어나 정사(政事)를 보되, 집안일은 다 물리쳐버릴 것이요, 주색(酒色) 때문에 스스로 고단해지지 말고, 함부로 즐기다가 스스로를 해치지도 말 것이다. 무슨 일은 결재하고 무슨 공문은 띄우며 무슨 부세(賦稅)는 처리하고 잡아 가둔 누구는 풀어줄 것인가를 시시로 살펴서 급급히 행할 것이요, 우선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고만 하지 않는다면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고 제 마음도 역시 편안해질 것이다." 하였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르기를, "술을 좋아하는 것은 다 객기(客氣)이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 이를 맑은 취미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객기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술 마시는 버릇이 오래 가면 게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마시던 주정부리는 자가 있고 마시면 말 많은 자가 있으며 마시면 잠자는 자도 있는데, 주정만 부리지 않으면 스스로 폐단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나 잔말·군소리 들은 아전이 괴로이 여길 것이요,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 있으면 백성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소리를 지르고 어지러이 떠들며 넘치는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만이 정사에 해가 된다고 하겠는가, 수령이 된 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매양 보매, 물정에 어둡고 소박하며 바깥출입이 없던 선비가 기생이란 것을 처음 친하게 되면, 그 빠져서 매혹됨이 더욱 심하여 이부자리 속에서 몰래 소곤거린 말을 금석같이 믿으며, 기생이란 것이 사람마다에 정을 주어서 인간의 본성이란 이미 없어지고 또 따로 이정부(情夫)가 있어 누설치 않는 말이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밤중에 소곤거린 말이 아침이면 이미 온 성(城) 안에 퍼지고, 저녁에는 온 고을에 자자하게 되는 것이다. 평생토록 단정하던 선비가 하루아침에 드디어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한가.

# 제2장 청심(淸心) : 마음을 깨끗이 함

○ 청렴은 수령의 본무인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 조선조에 청백리(淸白吏)<sup>23)</sup>로 뽑힌 자가 통틀어 110명인데, 태조(太祖) 이후에 45명, 중종(中宗) 이후에 37명, 인조(仁祖) 이후에 28명이었다. 경종(景宗) 이후로는 드디어 이렇게 뽑는 것조차 끊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니, 이

<sup>23)</sup> 청렴결백한 관리. 조선에서는 의정부(議政府), 6조(曹), 경조(京兆)의 2품(品) 이상의 당상관(堂上官) 과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우두머리가 천거하여 청렴결백한 관리를 선정하여 청백리라 하였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400여 년 동안에 속대입조자(東帶立朝者)<sup>24)</sup>가 거의 천 명이나 만명인데 그중에서 청백리로 뽑힌 자가 겨우 이 수에 그쳤으니 역시 사대부(士大夫)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 ○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로 하지 않겠느냐만 한밤중에 한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아전들은 매우 경박하여 들어와서 말하기를 "이 일은 비밀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울 뿐이오니 누가 감히 퍼뜨리겠습니까?"하므로 수령은 그 말을 깊이 믿어 뇌물을 흔연히 받지만 문밖에만 나서면 말을 떠벌려 꺼리지 않고 자기의 경쟁자를 억누르고자 하니,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막연히 듣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양진(楊震)이 말하는 넷이 알고 있다는 것외에 남이 안다는 것도 막아낼 수 없다.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가 되었을 때 무재(茂才)<sup>25)</sup> 왕밀(王密, 人名)이 창읍 (昌邑)<sup>26)</sup> 원을 제수받고서 밤에 금 열 근을 품고 와서 내어놓으면서 말하기를,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하니,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 말하니,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sup>27)</sup>

# ○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무릇 재물을 희사하고 봉록을 떼어내어 쓰더라도 마땅히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해당 아전에게 분부할 뿐이고 다시는 들추어 말하지 말 것이다. 혹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 정도 내어놓았지만 다음에는 그렇지도 못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말머리를 돌려다른 일이나 이야기하여 다시는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두연(杜衍)<sup>28)</sup>이 말하기를 "벼슬살이의 제일 요건은 청렴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말라. 진실로 남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동료 중에서 신중치 못한 자들이 많아서 반드시 자기를 참소하고, 윗사람이 또한 잘 살피지 못하여 화를 당하기 안성맞춤일뿐이다. 오직 묵묵히 실행하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

## 제3장 제가(齋家): 집안을 먼저 다스려라

○ 모친이 가르침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러한 집안을 법도가 있는 집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이 그를 본받을 것이다.

조찬(曹璨)29)은 빈(彬)의 아들이다. 절도사(節度使)가 되었을 때 그 모친이 어느 날 집

<sup>24)</sup> 예복을 입고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

<sup>25)</sup> 중국 한(漢)나라 때 인재(人材) 등용시험(登用試驗)의 과목(科目) 이름.

<sup>26)</sup> 중국의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현(縣)의 이름.

<sup>27)</sup> 고사(古事)는 『후한서(後漢書)』권(卷)54 양진열전(楊震列傳)에 나온다. / 『후한서(後漢書)』는 중국 남조(南朝)의 송(宋) 순양(順陽) 사람인 범엽(范曄)이 찬(撰)한 사서(史書)이다.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부터 효헌제(孝獻帝)까지 본기(本紀) 10권, 열전(列傳)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에 전하는 『후한서(後漢書)』에 들어 있는 팔지(八志)(律曆、禮儀、祭祀、天文、五行、郡國、百官、興服)는 후인(後人) 들이 사마표(司馬彪)의 『속한서(續漢書)』 중에서 보충하여 삽입한 것이다. 범엽(范曄)은 진(晋)의 안제(安帝) 융안(隆安) 2년(398)에 태어나서 관(官)은 좌위장군(左衛將軍), 태자첨사(太子詹事)에 이르렀는데, 송(宋) 원가(元嘉) 22년(445)에 모반죄로 사형 당하였다.

<sup>28)</sup> 중국 송(宋)나라 산음(山陰) 사람. 자는 세창(世昌), 시호는 정헌(正獻). 기국공(祁國公)에 봉해졌다.

의 창고에 돈 수천 꿰미가 쌓인 것을 보았다. 찬을 불러 그것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너의 선친께서는 내외로 벼슬을 역임하였지만 일찍이 이렇듯 재물이 쌓인 것을 못 보았다. 네가 너의 아버지보다 훨씬 못함을 알겠구나." 하였다.

양동산(楊東山)30)이 오(吳)의 태수로 있을 적에 그의 모친 나대부인(羅大夫人)은 일찍이 밭에 모시를 심고 몸소 길쌈을 해서 옷을 해 입었다. 동산이 월급을 떼어서 모친을 봉양하였는데 모친이 갑자기 병이 났다. 병이 나은 다음 모아둔 봉급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쌓아두고부터 마음이 즐겁지 않아서 병이 났었다. 이제 이 돈을 모두의원에게 사례로 보내면 나는 무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아서 모두 자기 젖으로 키웠는데, "남의 자식을 굶겨가며 나의 자식을 먹이는 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라고 하였다.

#### 제5장 절용(節用): 재물을 절약하라

○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절용은 수령의 으뜸이 되는 임무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겨우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방자하고 교만·사치해져서 절제(節制)하는 바가 없어 손닿는 대로 함부로 써버린다. 빚이 많아지게 되면 따라서 반드시 탐욕스럽게 된다. 탐욕하려면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게 되고,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게 되면 그 이득을 나누어야 되며, 그 이득을 나누게 되면 백성의 고혈이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절용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 천지가 물건을 낳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 쓰도록 한 것이다. 한 물건이라도 능히 버림이 없게 할 수 있어야 이에 재물을 옳게 쓴다고 할 수 있다.

윤현(尹鉉)<sup>31)</sup>이 호조판서가 되었는데 무릇 못 쓰게 된 자리, 땅 위에 까는 자리, 청연 포(靑緣布)<sup>32)</sup>를 모두 창고 속에 저장하니 뭇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었다. 그 후 못쓰게 된 자리는 조지서(造紙署)<sup>33)</sup>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서 종이를 만들었던바, 그 품질이 가장 좋았으며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어 야인(野人)<sup>34)</sup>의 옷띠를 만들었다.

고을 백성이 나무로 송덕비를 만들어 세우거든 마땅히 즉시 뽑아서 공고(工庫)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큰 것은 상사(喪事)를 당하고도 관이 없는 백성에게 주고 작은 것은 초통이나 먹이통 등 자그마한 기구들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백성의 동산에서 다시는 재목을 색출치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sup>29)</sup> 중국 송(宋)나라 사람. 자는 도광(韜光). 활을 잘 쏘며 『육도삼략(六韜三略)』에 익숙했고 『좌씨춘추 (左氏春秋)』를 좋아하였다. 계단(契丹)과의 싸움에 전공이 있었다.

<sup>30)</sup> 중국 송(宋)나라 사람. 만리(萬里)의 아들로 자는 백대(伯大), 호는 동산(東山), 이름은 장유(長孺), 시호는 문혜(文惠). 복건안무사(福建按撫使)를 지냈다.

<sup>31)</sup> 중종 9~선조 11(1514~1578) 자는 자용(子用), 호는 국간(菊磵), 본관은 파평(坡平), 시호는 충간(忠簡), 벼슬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윤필상(尹弼商)의 증손종(曾孫宗)으로 명종(明宗) 때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sup>32)</sup> 푸른 선을 두른 포(布).

<sup>33)</sup> 조선왕조 때 종이 뜨는 일을 맡은 관아(官衙). 태종 15년(1415)에 설치된 조지소(造紙所)를 세조 12년(1467)에 조지서(造紙署)로 개칭하였으며 이는 고종 19년(1882)에 폐지되었다.

<sup>34)</sup> 여진인(女眞人).

#### 제6장 낙시(樂施): 기꺼이 베풂

○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능히 절약하는 사람은 능히 베풀 수 있게 마련이요, 능히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진 못하게 마련이다. 창기를 불러 거문고 타고 피리 불고 비단옷 입고 높은 말에 좋은 안장을 타며, 게다가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귀(權貴)들에게 뇌물 바쳐 비용이 하루에 수 만전을 넘고 1년에 소비하는 돈이 억 만전이나 되고서야 어찌 친척들에게 베풀 수 있겠는가. 아껴 쓰는일은 기꺼이 베푸는 근본이다. 내가 귀양살이하면서 매양 수령들을 보면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자는 그 의복을 보면 반드시 검소한 것을 입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것을 즐기는 수령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 ○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 자라는 대로 도와줄 것이다.

방언겸(房彦謙)35)이 경양령(涇陽36)令)이 되었을 때 옛날부터의 가업(家業)이 있었으므로 받는 봉급은 모두 친척이나 친구들을 도와주는데 쓰고 비록 양식이 떨어져도 화평한 마음으로 지내었다. 일찍이 그 아들 현령(玄齡)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녹봉으로써 부자가되지만 나만은 벼슬살이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 자손에게 남겨줄 것은 청백(淸白)뿐이다."라고 하였다.

창고에 남은 재물이 있어서 그것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지극한 덕(德)이되기는 하지만 재물을 함부로 써서 관가에 결손지게 하면 도리가 아니다. 근세의 이복함(李 茯菴)<sup>37)</sup> 어른이 만윤(灣尹)<sup>38)</sup>이 되었을 때 지나치게 베풀다가 공채(公債)를 8천 냥이나 지게 하였다. 비록 그 과실을 보고 어진 마음을 알 수 있지만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본받을 바는 아니다.

## 제3부 봉공(奉公) 육조(六條)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한다)

제2장 수법(守法) : 법을 지킴

○ 무릇 국법(國法)의 금하는 바와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바는 마땅히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결같이 곧게 법만 지키는 일이 때로는 너무 구애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다소는 넘나듦이 있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도 또한 혹 변통하는 수가 있었다. 요컨대 자기의 마음이 천리(天理)의 공평함에서 나왔다면 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얽매여지킬 것은 없으며, 자기의 마음이 인욕(人慾)의 사사로움에서 나왔다면 법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을 범하여 죄를 받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범한 것이 반드시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한 일이니, 이런 경우는 다소 넘나듦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sup>35)</sup> 중국 수(隋)나라 때 사람. 자는 효충(孝沖), 방현령(房玄齡)의 아버지. 제주주부(齊州主簿), 자사(刺史)를 지냄 .

<sup>36)</sup> 중국 감숙성(甘肅省)에 있는 땅.

<sup>37)</sup> 이기양(李基讓)의 호.

<sup>38)</sup> 의주부윤(義州府尹).

#### 제3장 예제(禮際): 예의로 사귐

○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民生)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마 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히 자신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오불(吳芾)<sup>39)</sup>이 그 자제들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벼슬살이하게 되거든 관물(官物)을 마땅히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할 것이며 공사(公事)도 마땅히 나의 일처럼 보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백성에게 죄를 얻기보다는 차라리 상관에게 죄를 얻는 편이 낫다."고 하였다. 자하산인(紫霞山人)<sup>40)</sup>이 말하기를 백성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니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다.

○ 예(禮)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며, 의(義)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되니, 예와 의가 아 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 것을 일러 군자(君子)라 한다.

사대부의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언제라도 벼슬을 버린다는 의미로 '버릴 기(棄)'한 자를 벽에 써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무례하면 버리며,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버릴 것이다. 감사가 나를 언제든지 벼슬을 가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며 항상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오히려 자리를 잃을까 저어하여 황송하고 두려워하는 말씨와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으면 상관이 나를 업신여겨 계속 독촉만 하게 될 것이니 참으로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필연의 이치이다.

## 제4장 문보(文報): 보조 문서(공문서)

○ 공적으로 보내는 문첩(文牒)은 꼼꼼이 생각해서 자신이 써야 할 것이요, 이속의 손에 맡겨 두는 것은 불가하다.

관례에 따르는 형식적인 문첩(文牒)의 경우는 이속을 시켜도 무방하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서 폐단을 설명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위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받들어 행하지 않기로 작정한 경우에는 만약 이속의 손에 맡기면 반드시 사심을 끼고 간계를 품어 요긴한 말을 빼버리고 지엽적인 말만 늘어놓아서 그 일이 잘못되도록 만들 것이니 그래서 되겠는가.

한위공(韓魏公)은 행정실무에 근면하여 장부나 문서를 살피고 따지는 일을 모두 몸소하였다. 좌우에서 누군가 "공은 지위도 높고 나이도 연만하실 뿐 아니라 공명이 이러하시기에 조정에서 한 고을을 맡아 휴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그만 일까지 몸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가 답하기를 "내가 수고로움을 싫어하면 아전과 백성들이 폐를 입을 것이다. 또 녹봉이 하루 만 전(錢)인데 일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찌 편안할 것이냐?"고하였다.

명성과 지위가 자못 높은 사람들이 고을을 맡게 된 경우 대체만 파악하기를 힘쓰고 조그만 일은 친히 하지 아니하며 오직 풍류로 즐기려고만 하니 이것이 옳겠는가? ·····

<sup>39)</sup> 중국 송(宋)나라 선거(仙居) 사람. 자는 명가(明可), 호는 호산거사(湖山居士)(吳出居士), 시호는 강숙 (康肅). 벼슬은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이르렀고 저서로는 『호출집(湖出集)』이 있다.

<sup>40)</sup> 중국 송(宋)나라 선춘(宣春) 사람인 하영통(何令通)인 듯하다. 자하(紫霞)는 그의 호, 남당(南唐) 때 국사(國師)였다.

제6장 왕역(往役) : 출장 근무

○ 표류선(漂流船)을 문정(間情)⁴¹)하는 일은 사정은 급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서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표류선을 문정하는 데는 스스로 힘써야 할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 ① …… 각별히 공손하고 충실하고 신의 있게 하여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옳다. ② 우리나라 법에 표류선 안에 있는 문자는 인쇄본이거나 사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초록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 지금 해외 여러 나라의 선박제도가 기묘하여 운항에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는데도 선박제도가 소박하고 고루하다. 표류선을 만날 때마다 그 선박제도의 도설(圖說)을 상세히 기술하되, 재목은 무엇을 썼고 뱃전의 판자는 몇 장을 썼으며, 배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는 몇 도나 되며,…… 등의 여러 가지 묘리(妙理)를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모방할 것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표류인이 상륙하면 그 배를 큰 도끼로 쪼개고 부수어 즉시 불태워 없애버리려 하니 이것이 무슨법인가. 뜻있는 선비가 이런 일을 맡았으면 마땅히 이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⑤ 외국인과 말을 할 때에는 마땅히 동정하는 빛을 보여야 하며, 음식물 등 필요한 것은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성과 후의가 얼굴빛에 나타나게 하면 그들이 감복하여 기뻐할 것이며 돌아가서도 좋은 말을 할 것이다.

# 제4부 애민(愛民) 육조(六條) (백성을 사랑함)

제1장 양로(養老): 노인을 공경함

○ 양로(養老)의 예가 폐지된 후에 백성들은 효도를 일으키지 않으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다시 양로의 예를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호(星湖)<sup>42)</sup>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도하고 우애하지 않는 자는 있어도 우애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의 제도에 우애는 향촌에 통하 고 우애는 길거리에서도 통하며 우애는 군대에서도 통하니, 우애의 교화는 국가의 양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 제2장 자유(慈幼) : 어린이를 보살핌

○ 자유(慈幼)라는 것은 선왕(先王)<sup>43)</sup>의 큰 정사(政事)였으니, 역대로 이를 닦아 행하여 법으로 삼아왔다.

송(宋)나라 제도에 군현(郡縣)마다 자유국(慈幼局, 고아원)을 세우고, 무릇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기르지 못하고 내버릴 경우에는 그 아이를 안고 자유국에 데려오도록 하여, 그생년월일을 쓰고, 자유국에서 유모를 두어 기르되, 다른 사람 집에서 혹시 자녀가 없으면 곧 자유국에 와서 데려다 기르도록 하였더니, 흉년이 들어도 길가에 아이를 내버리는 자가 없었다.

<sup>41)</sup> 외국의 선박이 왔을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조사하는 일.

<sup>42)</sup> 이익(李瀷)의 호(號). 이익(숙종 7~영조 39, 1681~1763)의 자(字)는자신(子新), 본관은 여주(驪州). 이조후기 실학(實學)의 대가(大家). 저서로는 『성호사설(星湖僿說)』『성호문집(星湖文集)』등 다수가 있다.

<sup>43)</sup>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행한 옛 훌륭한 임금들.

제3장 진궁(振窮): 가난한 자를 구제함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진(振)44)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이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문왕(文王)이 정치를 펴 인(仁)을 베풂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궁을 먼저 걱정하였고, …… 『시경(詩經)』에서 말하기를 "넉넉한 사람들이야 좋지만, 시들고 외로운 사람들은 불쌍도 하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을 일러 사궁이라한다.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비록 육친(六親)이 없다 하더라도 사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궁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된 사람은, 아마도 천하에 거의 없을 것이다. 한 고을에서 찾아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불과 몇 사람일 것이므로 명목은 크더라도 실제 경비는 적은 것이니, 그것을 실행함이 어렵지 않다. 어찌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1년 동안 소비하는 것이 몇 섬의 곡식에 지나지 않는데도 도(道)는 옛 성인에 접하고 이름은 후세에 남을 것이니 그 것이 아까울 것인가.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무릇 천하에 노인과 병자 및 불구자와 시들고 외로운 홀아비와 과부는 모두 나의 형제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호소할 곳 없는 사람들이다. 군자의 정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베푸는 것을 힘써야 할 것이다." <sup>45)</sup>

## ○ 과년토록 결혼을 못한 자는 관에서 마땅히 이를 성혼(成婚)시키도록 해야 한다.

····· 옛날에 30에 아내를 갖고, 20에 시집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것을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한계이다. 그러나 남자는 마땅히 25세로 마지막 한계를 정할 것이요, 옛말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왕질(王質)이 임시로 형남(荊南)<sup>46)</sup>을 다스릴 때 백성 가운데 혼사에 관한 송사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소장(訴狀)에서 "가난하여 혼사 비용이 없어 기일을 뒤로 미룬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얼마인가를 묻고 봉급의 일부를 주어 혼사를 치르게 하였다.

## ○ 합독(合獨)의 정사도 또한 실행할 만한 것이다.

관자(管子)는 말하였다. "무릇 도읍에는 모두 중매를 맡은 이가 있어서 홀아비와 과부를 골라 화합시키니 이를 합독(合獨)이라 부른다. 합독 또한 선정(善政)인 것이다. ……" 어찌 수령이 예(禮)로써 권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각자의 제자리를 얻게 함과 같겠는가? 이런 일은 비록 반드시 법령으로 발할 것까지는 없지만 마땅히 백성들에게 은근히 타일러서 옛날 사람들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 제4장 애상(哀喪) : 상사(喪事)를 애도함

○ 상(喪)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徭役)을 감해 주는 것이 옛날의 도(道)이다. 수령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sup>44)</sup> 떨쳐 일어남, 자립(自立)의 의미.

<sup>45) &</sup>lt;근사록(近思錄) : 주자(朱子)가 주무숙(周茂叔)、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장횡거(張橫渠)의 저서와 어록(語錄)을 선집(選集)하여 편찬한 『근사록(近思錄)』에다가 주자(朱子)의 학설을 첨가하여 만든 중국 송대(宋代)의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책,

<sup>46)</sup> 남방(南方) 형주(荊州)의 지명. 현재 호북성(湖北省) · 호(湖) 남성(南省) 일대.

이제 마땅히 그 법을 정하여 무릇 부모의 상을 당한 자에게는 100일 이내에는 일체의 연호잡역(烟戶雜役)<sup>47)</sup>을 관대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마도 옛 뜻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번잡하고 허(虛)와 실(實)을 가리기가 어려우니 불가불 조심해야할 것이다.

### 제5장 관질(寬疾): 환자를 돌봄

○ 곱사둥이나 불치병자들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 의탁할 곳을 마련하고 홀양(恤養)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님·절름발이·손발병신·나환자 같은 이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바이다. 또한 육친(六親)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며 안주할 곳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종족 (宗族)들을 타이르고 관에서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주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제6장 구재(救災): 재난을 구제함

○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또한 이미 재앙을 당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불을 끄려다 머리를 그슬리고 얼굴을 데는 수고는 미리 굴뚝을 돌리고 땔감을 불 가까이에서 치워버리는 것만 못하다. 산골의 민가가 지대가 낮고 물에 가까운 것은 마땅히 평일에 옮기도록 경계해 줄 것이다. ……

## 제5부 이전(吏典) 육조(六條) (행정업무 총괄)

제1장 속리(束吏): 아전을 단속함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자신을 규율(規律)함에 있다. 자기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일이 행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을 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은 토지로써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으로써 논밭을 삼는다.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으로써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써 수확하는 일을 삼는다. 이러한 습성이 이루어져서 당연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아니하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허물이 없고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있는 것이 천하의 일반 이치이니, 수령의 소행이 족히 다른 사람을 신복(信服)시키지 못하면서 오직 아전 단속하기를 위주로한다면, 명령해도 반드시 행하여지지 않으며 금지해도 반드시 그쳐지지 않고 위엄이 떨치지않을 것이며 법이 서지도 않을 것이다. 스스로는 황음(荒淫)한 짓을 하면서도 항상 말하기를 "아전들의 습속이 극악하다"고 하는 것은 통할 수 없는 말이다.

세속 수령들은 흔히 엄한 형벌과 무서운 매질로써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청렴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사나움으로써 위주하면 그 폐단이 난(亂)에 이를 것이다.

<sup>47)</sup> 요역(徭役) 동원의 기준인(田 8結마다 1夫씩)의 원칙에 의해 동원된 연호군(烟戶軍)의 토목(土木)、영 선(營繕) 등의 민역(民役)을 말한다. 정병(正兵) 및 수군(水軍)도 본래의 군사(軍士)로서의 임무를 떠나 토목(土木)、영선(營繕) 등의 공사장(工事場)에 동원되는 역졸화(役卒化)의 경향이 있었다. 약칭 연역 (烟役).

○ 예(禮)로써 바로잡고 은혜로써 대한 뒤에라야 법으로써 단속할 것이니, 만약 능멸 하여 짓밟고 함부로 부리며 이랬다 저랬다 속임수로 몰아가면 단속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 이다.

조빈(曹彬)48)은 아전들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매양 아전들이 무슨 일을 아뢸 때마다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서야 접견하였다. ……

아전은 자벌레처럼 움츠리고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것이지만, 응대(應對)에는 물 흐르 듯 기민하다. 수령이 마치 벌레처럼 내려다보고 때로는 작은 재주와 얕은 꾀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조종하고는 스스로 잡았다 놓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듯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전의 무리가 마치 여관의 주인처럼 나그네 겪어 보기에 이력이 나서 성위(誠僞)와 허실(虛實)을 환히 눈에 익혀두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관정(官庭)에 엎드려서는 서로 더불어 킥킥거리며 몰래 웃다가 관문을 나서기만 하면 만 가지로 비웃는 줄을 수령이 알지 못한다. 장차무슨 도움이 있을 것인가. 다만 마땅히 지성으로 대하여 알거든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거든 모른다고 하며, 죄가 있으면 벌주고 죄가 없으면 용서하여 한결같이 떳떳한 이치를 좇을 일이요 술수를 부리는 일이 없어야만 이에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 윗사람으로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은 성인(聖人)이 경계한 바이니, 너그러우면 서도 풀어지지 않으며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으면 또한 일을 그르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양귀산(楊龜山)이 일렀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랫사람을 부리되 너그러움으로써 하라' 하였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단속하지 않고서 오직 너그럽기만 힘쓴다면 아전들이 문서를 꾸미고 법을 농간하여 관부(官府)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권한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하여, 조종하며 통제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면 크게 관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 제2장 어중(馭衆): 아랫사람 다스리기

○ 어중(馭衆)하는 방법은 위엄과 믿음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생겨나고 믿음은 성실에서 나오는 것이니, 성실하고도 능히 청렴해야 이에 뭇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설경헌(薛敬軒)49)은 말하였다. "마음에 털끝만큼도 편향(偏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편향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엿보아서 알게 된다. 내가 일찍이 한 하인을 부렸는데 그가 자못 민첩함을 보고 그를 부리기를 좀 자주 하였더니 다른 하인들이 그를 무겁게 여겼 다. 나는 드디어 그를 쫓아내었다.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로써 수령 자리에 있는 자 는 마땅히 공명정대하여야지 털끝만큼도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제3장 용인(用人) : 인사 관리

○ 나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렸으니 군·현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사람 쓰는 일은 다르지 않다.

자유(子游)50)가 무성(武城)51)의 원이 되었을 때 공자가 "쓸 만한 사람을 얻었는가?"

<sup>48)</sup> 중국 송(宋)나라 초기의 장군. 송(宋)이 중국을 통일함에 크게 공을 세워 당시 양장제일(良將第一)이라 불리었다.

<sup>49)</sup> 설선(薛瑄). 경헌(敬軒)은 그의 호.

<sup>50)</sup>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오(吳)나라 사람. 성은 언(言), 이름은 언(偃), 자유(子游)는 자(字)이다. 공자 (孔子)의 제자이다.

하고 물었다. 자유가 "담대멸명(擔臺滅明)이란 사람이 있는데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사(公事)가 아니면 나의 방에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 지름길을 다니지 않는다고 한 것은 겹문이나 옆길을 지나 관아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공무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오직 나라일과 백성의 일로만 들어와서 의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향승(鄕丞, 관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됨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향정(鄕亭)52)의 직책을 맡기려 하는 사람은 이 글을 숙독함이 옳을 것이다.

중궁(仲弓)<sup>53)</sup>이 계씨(季氏)<sup>54)</sup>의 가신(家臣)이 되었을 때 정사하는 법을 물었는데 공자가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일에 힘쓰라 하였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진 사람 등용하기를 급무로 삼아야 한다. 원리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 소 잡는 칼로써 닭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향승·군교(軍校)와 여러 아전에서부터 풍헌·약정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쓸 만한 사람을 얻는 데 힘써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복자천(必子賤)55)이 선보(單父)56)를 다스릴 때 그곳에는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로 사귀는 사람도 있었고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가 거문고나 타고 정당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도 선보는 다스려졌다. 무마기(巫馬期)57)도 역시 선보를 다스렸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고, 밤낮으로 앉아 있지 않으면서 몸소 직접 일을 보아야 선보가 다스려졌다. 무마기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복자천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에게 맡겼고 그대는 자신의 노력에 맡겼다고 할 것이다. 노력에 맡기면 고되고 사람에게 맡기면 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제4장 거현(擧賢) : 어진이를 천거함

○ 거현(擧賢)은 수령의 직책이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거현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오늘날 천하의 현자(賢者)가 지혜롭고 유능하다면 내가 능히 그를 존경하고 현달시킬 것이니 군수는 여기에 뜻을 두어 명덕(明德)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몸소 권하여 그를 말에 태워 서울로 와서 상국부 (相國府)에 나아가도록 하라"고 하였다.

문제(文帝)<sup>58)</sup>는 군수에게 조서를 내려 "현량(賢良)하고 능히 직언(直言) 극간(極諫)하는 사람을 천거하라"고 하였다. ……

# 제5장 찰물(察物) : 희계 관리, 물정을 살핌

○ 수령이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밖은 모두 나를 속이는 자들이다. 눈을 사방에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하는 일은 오직 제왕만이 그러해야 하는

<sup>51)</sup>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읍(邑)으로 지금 산동성(山東省) 비현(費縣)의 서남.

<sup>52)</sup> 지방도로의 각 요소에 설치된 것으로, 연락·숙박·감시등의 기능을 갖고 있음. 10리(里) 1정(亭), 10정(停) 1향(鄕).

<sup>53)</sup>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 염옹(冉雍)의 자. 공자(孔子)의 제자, 십철(十哲)의 하나.

<sup>54)</sup>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계손씨(季孫氏). 문공(文公) 때부터 소공(昭公) 때까지 국정(國政)을 장악하였다.

<sup>55)</sup>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 복불재(宓不齋). 자가 자천(子賤)이다. 공자(孔子)의 제자.

<sup>56)</sup>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읍명(邑名). 산동성(山東省) 단현(單縣)의 남쪽.

<sup>57)</sup> 중국 춘추시대 진(陳)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무마시(巫馬施)의 오기(誤記)이다. 자는 자기(子旗), 공자 (孔子)의 제자이다.

<sup>58)</sup> 중국 한(漢)의 효문제(孝文帝)인 유궁(劉恆).

#### 것은 아니다.

······ 수령의 정사에 혹시 잘못한 바가 있으면 주저함 없이 고쳐 시행할 것이요, 민폐를 혹 고해오는 바가 있으면 단연코 개혁할 것이요,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하는 것도 또한모름지기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관리(官吏)가 고발을 당하면 정말 부정이 있는 자는 즉일로 조사 처리하고 실제 증거가 없는 일은 다시 조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속(吏屬)들이 백성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 무릇 미세한 허물 잗다란 홈은 마땅히 용인하여 보아 넘길 것이니, 지나치게 세세히 밟히는 것은 진정한 밟음이 아니다. 이따금 가다가 부정을 적발하되 그 기미를 살핌이 귀신같아야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수령이 아전들이나 향임(鄉任)들의 한두 가지 숨겨진 부정을 듣고는 마치 기화(奇貨)라도 얻은 듯 그 부정을 들춰내어 세상에 드러내놓고 떠들며 스스로 그 세세히 밝혀내는 밝음을 과시하는 것은 천하에 박덕한 짓이다. 그 큰 사건은 들춰내되, 그 작은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하고, 혹은 속짐작만 하기도 하며, 또 혹은 은밀히 그 사람을 불러 따뜻한 말로 훈계하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여, 너그럽되 늘어지지 않고 엄격하되 가혹하지 않아 온후하게 덕이 있어 진심으로 감동하여 좋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랫사람을 통어하는 길이다. 세세하게 심연에 숨은 고기를 살피고 경솔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어찌 훌륭한 수령의 할 바이겠는가.

# 제6부 호전(戶典) 육조(六條) (세금관리)

제3장 곡부(穀簿): 재원 관리, 환곡의 관리

○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기 어렵다.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데 온갖 방법이 쓰여 지고 귀신같이 간활해서 밝게 살피지 못한다.

. . . . . .

제5장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함

○ 역역(力役)<sup>59)</sup>의 부과는 신중히 하되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로운 일이 아니면 하여서는 안 된다.

•••••

# 제7부 예전(禮典) 육조(六條) (예법 운영)

제3장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일 따름이다.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교민하기 위함이요,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교민하기 위함이요,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는 것도 장차 교민하기 위함이요, 형벌을 밝히고 법규를 갖추는 것도 장차 교민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정사가 정비돼 있지 않아서 교화를 일으킬 겨를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백 대에 이르도록 선치가 없었던 것이다.

<sup>59)</sup> 요역(徭役)의 일종으로서 여러 가지 노동력의 부담을 말한다.

• • • • • •

○ 가르치지 아니하고서 형벌하는 것을 일러 망민(罔民, 백성들을 기만함)이라 한다. 비록 흉악한 불효자일지라도 일단 가르치고 나서 고치지 아니하면 죽일 것이다.

박세량(朴世樑)이 신창(新昌) 현감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포악한 놈이 그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아 그 어미의 고소를 받아 고을의 감옥에 구금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그의 죄를 늘어놓으며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청원하였다. 박세량이 슬픈 듯이 말하기를 "그도 또한 사람인데 가르치지도 않고서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않다"하고 모자간의 은의와 선악의분별을 들어 비유해서 깨우치니 그는 깨닫고 새사람이 될 것을 빌었다. 박세량이 그의 죄를 풀고 후하게 주어 보내면서 돌아가 어미를 봉양하도록 하니, 그는 드디어 태도를 고쳐 착한일을 하여 효도로 일컬어졌다.

## 제4장 홍학(與學): 학교를 일으킴

○ 옛날의 소위 학교(學校)는 예(禮)를 익히고 악(樂)을 익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예도 무너지고 악도 무너져서 학교의 교육은 독서(讀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옛날에는 태학(太學)에서 양로(養老)의 예(禮)를 행하여 효행을 일으키고, 치학(齒學)60 의 예를 행하여 윗사람을 공경하는 기풍을 일으키고, 고아를 먹여주는 예를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저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효(孝)·제(弟)·자(慈)가 태학의 종지(宗旨)로된 까닭이다. 수령은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궁(學宮)에서 양로의 예를 행하고위의 제6편에 나와 있다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효제(孝弟)를 일으킬 것이다. 혹시 갓 외적의 난리를 겪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으면 그 고아들을 돌보아 주어현재 定州에서와 같이 고아를 구휼하는 뜻을 두어야만 족히 제도가 갖추어졌다 할 것이다. 난리가 지난지 오래 되었으면 창의(倡義)한 집의 자손을 두루 찾아봄에 학궁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것이 역시 충성을 권장하는 요기한 일이다.

## 제8부 병전(兵典) 육조(六條) (군사관리)

제5장 웅변(應變): 변란에 대비함

○ 무릇 변란이 있으면 마땅히 놀라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하여 그 사 태의 변전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송나라 우윤칙(虞允則)61)이 일찍이 군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데 병기고에 불이 났다. 우윤칙은 풍악을 울리고 술 마시기를 중지하지 않았더니 조금 후에 불이 꺼졌다. 어떤 자가 이를 힐난하니 대답하기를 "병장기가 소장된 곳에는 화재 방지가 아주 엄한데 바야흐로 연회를 베푸는데 불이 나니 반드시 간인(奸人)의 소위인 것이다. 만약 연회를 그만두고 진화 작업에 나선다면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하였다.

# 제6장 어구(禦寇) : 국토 방위, 외적에 대한 방어

○ 병법(兵法)에 "허(虛)하면 실(實)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하면 허한 것처럼 보이

<sup>60)</sup> 연상자를 공경한다는 뜻으로, 예컨대 연령(年齡) 순서로 좌석의 차례를 정하고 술잔을 먼저 돌리는 것 등과 같다.

<sup>61)</sup> 미상.

#### 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방어하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두어야 할 일이다.

한(漢)나라 염범(廉范)62)이 운중 태수(雲中太守)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흉노(匈奴)가 크게 쳐들어와서 그가 막아 싸우게 되었는데, 이속들은 군사가 적다고 이웃 고을에 편지를 보내 구원병을 청하려 했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군사들을 시켜 각자 홱두개를 얽어 묶어 세 군데 불을 붙이니 군영 안이 하늘에 별이 늘어선 듯했다. 흉노는 구원 군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놀라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퇴각하려 했다. 그는 군사들에게 일찍 밥을 먹이고 새벽에 추격을 해서 적의 머리 수백 급(級)을 베었으며, 또 저희들 끼리 서로 밟고 깔려 죽은 자도 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로 인해서 흉노는 다시 감히 운중지방을 엿보지 못했다.

송(宋)나라 소승지(蕭承之)63)가 제남(齋南)64) 태수로 있을 때의 일이다. 북위(北魏)의 군대가 제남 지방을 쳐들어와서 그가 군사 수백 인을 거느리고 대적하게 되었다. 북위의 군사가 몰려들었는데, 그는 병장기를 감추고 성문을 열어놓도록 했다. 모두들 나서서 "적은 많고 우리들은 적은데 어찌해서 적을 가볍게 보는가?"하고 말했으나, 그는 "지금 외롭게 곤궁한 성을 지키고 있으니 사세가 매우 급박하다. 만약 또 약한 듯이 보이면 필시 도륙을 당할 것이다. 오직 강하게 보이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북위 사람들은 복병(伏兵)이 있는가 의심하고 드디어 군대를 끌고 물러갔다.

## 제9부 형전(刑典) 육조(六條) (형법과 법률)

제1장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 청송의 근본은 성의(誠意)65)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66)에 있다.

『중용(中庸)』에서는 『시경(詩經)』을 인용하여 "'나아가 신명(神明)에 이르매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에 다툼이 없다'67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상주지 아니하여도 백성들은 서로 선(善)을 권하며 노하지 아니하여도 백성들은 부월(鈇鉞)68)보다 두려워한다."69)고 하였다. 『대학(大學)』에서는 공자(孔子)의 말을 인용하여 "청송을 하게 된다면나도 다른 이와 같겠지만, 나는 반드시 아예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70)고 하였다. …… 대저 청송한다는 것과 아예 쟁송이 없게 한다는 것은 그 차이가 실로 크다. 청송이라는 것은 말과 표정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일이요, 쟁송이 없게 한다는 것은 "밝은 덕(德)은 말과 표정으로써 크게 나타내지는 않음을 생각한다."71)는 뜻이다. 성인(聖人)은 언제나 신독과 성의를 간직하여 몸을 닦음을 생각하는 고로 백성들이 자연히 나아와 이르러 우

<sup>62)</sup> 중국 후한(後漢) 때 인물. 자는 숙도(叔度). 소년 시절에 효행(孝行)으로 이름을 얻었고 무재(茂才)로 뽑혀 운중태수(雲中太守)가 되었는데 흉노(匈奴)가 감히 침범하지 못했고 촉군태수(蜀郡太守)로 옮겨서도 치적이 있었다.

<sup>63)</sup> 중국 남북조시대 송(宋)나라의 인물.

<sup>64)</sup>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지명(地名). 지금은 제남(濟南)이라 한다.

<sup>65)</sup> 이른바 『대학(大學)』 8조목(條目)의 하나이니, 뜻을 정성스럽게 가진다는 말이다.

<sup>66)</sup> 남을 의식하지 않는,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 참되게 한다는 뜻이다.

<sup>67) 『</sup>시경(詩經)』 상송(商頌) 열조편(烈祖篇)에서의 인용. 조상 신명(神明)의 강림을 빌 때에 그 성경(誠敬)이 지극하므로 이에 말하지 않아도 아래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된다는 뜻이다.

<sup>68)</sup> 작두와 도끼이니 형벌의 도구.

<sup>69) 『</sup>중용집주(中庸集註)』 33장(章)에서의 인용이다.

<sup>70) 『</sup>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

<sup>71) 『</sup>시경(詩經)』 대아(大雅) 황의(皇矣)편의 구(句)를 『중용(中庸)』에서 다시 인용하였다. 참다운 교화(教化)는 소리나 표정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덕화(德化)여야 한다는 뜻이다.

러러보고 두려워하여 감히 사실이 아닌 말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백성을 교화하는 지극한 효험이다. 천하 만민이란 워낙 빽빽하고 총총하니 집집마다 타이르고 가호마다 달래 거나 입과 혀로써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도는 통치자가 정성을 지극히 하고 공경함을 독실히 하면 천하가 저절로 평온해진다는 것이니, 이 모두가 아예 쟁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 제4장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김

○ 유배당한 사람은 가정을 떠나 멀리 귀양 와 있으니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다.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하게 머물게 함이 수령의 책임이다.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니, 능멸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의 정사가 아니다. ……

곤궁할 때에 받은 감동은 골수에 새겨지게 되고, 곤궁할 때의 원망 또한 골수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덕을 품고 죽으면 반드시 저승에서의 보답이 있을 것이요, 원한을 품고 죽으면 반드시 저승에서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천지가 변화하고 추위와 더위가 교대로 옮겨지듯이, 부귀한 자가 반드시 항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요, 곤궁하고 고통받는 자도역시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군자는 이에 마땅히 조심조심 마음을 다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유배자의 여러 인척과 친족들이 아직도 서울에 있을 것이니, 수령이 덕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누가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겠으며, 수령이 학대한다는 것을 들으면 누가 가만히 욕하지 않겠는가. 부지중에 혹은 명예가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분노와 증오가 쌓이기도 할 것이니, 수령 자신의 이해(利害)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 제6장 제해(除害) : 치안 관리, 폐해를 제거함

○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은 목민관의 임무이니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붙이요, 세째는 호랑이다. 이 세 가지가 사라져야 백성들의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모여 한담할 적에 세상에 무서운 것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무서우냐고 물어보면 의견이 각기 달라서 어떤 사람은 도적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붙이를 두려워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두려워한다고 하니 이 세 가지가 백성들에게 해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제12부 해관(解官) 육조(六條) (관직에서 물러남)

제1장 체대(源代): 벼슬이 갈림

○ 수령직에는 반드시 체임(遞任)이 있게 마련이다. 체임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

• • • • • •

# 제3장 원류(願留) : 더 머무르기를 원함

○ 수령의 떠남을 매우 애석히 여겨 길을 막고 유임을 원하는 일은 사책(史冊)에 그 광휘(光輝)가 전해져 후세에 빛나는 것이니 이는 겉시늉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맹상(孟嘗)이 합포(合浦) 태수로 있다가 돌아갈 때 아전과 백성들이 수례를 붙잡고 만류하여 행차가 나아갈 수 없게 하니 상선(商船)에 의탁하여 밤에 몰래 떠났다.

당나라 원자(袁滋)<sup>72)</sup>가 화주(華州) 자사로 있을 때 정사가 맑고 간략했다. 임기가 차서 양오릉(楊於陵)<sup>73)</sup>이 대신하게 되었는데 원자가 떠날 때 늙은이들이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했다. 양오릉이 사람을 시켜 타이르기를 "내가 감히 원공의 정사를 바꾸지 않겠다."라 하니 사람들이 모두 늘어서서 절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떠날 수 있었다.

○ 명성이 퍼져 혹 이웃 고을에서 수령으로 모시기를 빌거나 두 고을에서 서로 수령으로 모시기를 다툰다면 이는 어진 수령의 빛나는 값어치이다.

송나라 두연(杜衍)이 건주(乾州)74)를 맡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일년이 못되어 안무사 (安撫使)가 그의 치적을 살펴 그에게 봉상부(鳳翔75)府)도 임시로 맡게 했다. 두 고을의 백성이 경계에서 다투기를, 한쪽은 "이 분은 우리 사또인데 너희가 왜 뺏어 가느냐?"라 했고 또 한쪽은 "이제는 우리 사또인데 너희가 왜 상관하느냐?"라 했다.

제6장 유애(遺愛) : 정(情, 사랑)을 남김

○ 애모(愛慕)하여 잊지 못하고 수령의 성(姓)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소위 민정(民情)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1/1)

강조(江祚)<sup>76)</sup>가 안남(安南) 태수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의 덕을 사모하여 아들의 이름을 강(江)이라 지었다.

<sup>72)</sup> 중국 당(唐)나라 사람. 자는 덕심(德深). 벼슬은 중서시낭(中書侍郎) 등을 역임.

<sup>73)</sup> 중국 당(唐)나라 사람. 자는 달부(達夫), 시호는 정효(貞孝). 벼슬은 호부상서(戶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sup>74)</sup>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지명.

<sup>75)</sup> 중국 섬서성(陝西省)에 있는 지명.

<sup>76)</sup> 미상.